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19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박수민의원안)	3

I. 개요

1. 박수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190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박수민의원 등 11인
- (2) 제 안 일 : 2024. 8. 26.
- (3) 회 부 일 : 2024. 8. 27.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사업자인 국내 모회사가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에게 사업용으로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정률로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특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건설사업의 수주에 더욱 진정성 있는 모회사는 해외건설사업자인 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해당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적극적인 경영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음에도 동일하게 회수가 곤란한 출자전환 손실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에 산입하는 특례를 허용하지 않아 세제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 크게 저해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세제지원하고 있는 사업용으로 지급한 대여금과 유사한 요건을 갖춘 해외건설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

하여도 10년간 균등하게 해외건설 모회사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모회사의 세무상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 사업의 수주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4조의33).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박수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3) ①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 특례 내용: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이자 등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 산입 ○ 적용요건: ㉠~㉣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 ㉠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 ㉡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아닐 경우 - ㉢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최초 회수기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 ㉣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순자산 < 0)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 비율* * 2024년 10%, 100%를 한도로 매년 10%상향 ② <신 설>	□ 출자전환 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자전환 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

현 행	개정안
	<u>손금산입 특례</u> ○ <u>특례 내용: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대여금 등을 주식 등으로 출자전환한 경우, 출자전환 손실*을 ‘①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의 대여금등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을 손금 산입</u> <u>* 채권 액면가액 - 주식 등 시가</u> ○ <u>적용요건: ㉠~㉣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u> - <u>㉠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아닐 경우</u> - <u>㉡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출자전환 대여금등을 출자전환한 이후 5년 이상 경과하였을 경우</u> - <u>㉢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순자산 < 0)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 <u>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 중 (처분 주식 수/출자전환 취득 주식 수) 비율의 대손충당금을 익금에 산입</u> ○ <u>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u> ○ <u>적용례: 법 시행 이후 출자전환 손실을 대여금등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경우부터 적용</u>

* 박수민의원안 2024. 8. 26. 발의(의안번호 3190)

☐ 개정안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

자전환¹⁾ 손실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내국법인이 해외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방법은 해외지점(또는 해외사업소)을 설치하는 방법과 자회사(해외현지법인)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나누어지며, 이에 따라 세법상 규율도 달라지게 됨.

해외지점은 모회사와 같은 법인으로 진출지역에서 본사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며, 내국법인의 일부이므로 지점의 소득은 국내본점과 합산되어 우리나라에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됨.

반면, 자회사는 해외 현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본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법인체이므로 본사의 업무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경영조직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국내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소득이 합산되지 않음.

한편, 지점 형태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이 어려워져 손실이 발생할 경우 모회사의 손금으로 산입이 가능하지만, 자회사 형태의 경우 자회사에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자본잠식 등이 발생하더라도 모회사가 지급한 대여금 등은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을 통해 손금으로 산입해야 함.

한편, 「법인세법」에서는 자의적인 충당금 설정 및 대손처리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의 완성, 채무자의 파산 등 대손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음.

1) 출자전환이란 기업의 채권자가 보유하는 채권 등을 해당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함.

대손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²⁾ 대손충당금은 법인이 외상매출금·받을 어음·대여금·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³⁾

2)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가지급금(假支給金) 등,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역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무역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으로 확인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9의2.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이 호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한다.
10. 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금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3)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자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지급하는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가지급금 등이 아니라면 정상적인 채권으로 보아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약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세법상 접대비로 간주되어 접대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음.⁴⁾

한편, 2010년대 주요 건설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은 모회사로부터 대여금을 받아 공사비 등에 사용하였으나⁵⁾ 이후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 공사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모회사의 대여금은 청산·파산 전에는 대손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 경영상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그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 현재의 해당 대손충당금 중 합병법인등이 승계(해당 대손충당금에 대응하는 채권이 함께 승계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받은 금액은 그 합병법인등이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에 가지고 있는 대손충당금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하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범위와 대손충당금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기업업무추진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해당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5) 현지법인의 자금유용에 대해 모회사가 이행보증을 하여 계약을 수주하고 이후 대여금을 통해 해외자회사를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어려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2023년 세법개정으로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법 제104조의33)가 신설되었음.

동 제도는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자 등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하고 해외건설자회사가 계속하여 자본잠식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에서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손금산입비율에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임. 손금산입비율은 2024년에 10%이며 매년 10%씩 상향되어 2033년 이후에는 100%임.

- 개정안은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자회사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회수가 곤란한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영행위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해외건설사업자의 적극적인 해외수주활동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세계건설시장 규모는 2015년 9.9조 달러에서 2023년 13.9조 달러로 성장했고, 2024년에는 14.5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해외건설 수주를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 등을 도모할 수 있음.⁶⁾

특히 고유가 지속으로 중동국가의 대형 건설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인도네시아 신수도 개발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발주가 기대됨.⁷⁾

6) 해외건설협회, '2024년 상반기 해외건설 수주실적', 2024. 7.

7) 현대경제연구원, '해외건설의 산업적 가치 재평가', 2024. 8.

그러나 2024년 상반기에는 234개사가 79개국에서 155.8억 달러를 수주하여 전년동기 대비 9.9% 감소하였으며, 연간 수주액은 2020년 351억 달러에서 감소 추세에 있는 상황임.

개정안은 모기업이 이전보다 더 적은 부담으로 출자전환을 통해 자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건설 수주에 국내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해외건설업에 대해서만 현지 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의 출자 전환 손실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것은 업종간 과세형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

둘째, 출자전환 손실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를 신규로 신설하여 제공하는 경우 모회사의 대여금 회수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해외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을 주식 등으로 출자전환하면 자회사는 부채비율 하락과 원리금 상환 압박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고, 모회사는 지분율이 높아져 경영정상화 이후 배당이 늘어나거나 주식매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등 출자전환에 따른 경제적이익을 기대할 수 있음.⁸⁾

이를 고려할 때, 출자전환 손실의 손금산입에 대해 과세특례가 신

8) 김상진·신호영, ‘출자전환손실의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에 관한 연구’, 2021. 6.

설되면 모회사가 대여금 회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대신 대여금을 주식 등으로 전환하는 유인이 강화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

셋째, 명백한 회수불능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대여금을 출자전환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손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모회사가 출자전환 손실을 손금산입한 이후 자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게 되면, 모회사가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로 전환될 수 있음. 그런데 자회사의 주식 가치가 (+)가 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식을 처분하기 전까지는 익금으로 반영되지 않아 담세력에 부합하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55